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기술형입찰 평가에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화를 통하여 BIM을 활성화하고, 단독업체 응찰시 설계평가방법·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BIM 배점 및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 반영(안 별표6, 별표7)

나.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설계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평가방법 및 절차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3조, 제27조, 제32조, 별표4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564, 3565(팩스 044-201-5551)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